

예 산 총 칙

2007 년도 [2 회추경]

* 제1조 : 2007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884,260,000	26,527,800
일 반 회 계		806,900,000	24,207,000
특 별 회 계		77,360,000	2,320,8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30,000	450,900
	주택사업특별회계	560,000	16,8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270,000	368,1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60,000	46,8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10,000	144,3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0,000	3,600
	치수사업특별회계	1,080,000	32,4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00,000	42,0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500,000	15,0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90,000	59,700
	청소사업특별회계	35,160,000	1,054,8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	310,000	9,300
	기반시설특별회계	2,570,000	77,100

※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 43,900,000천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7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0,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245,228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